

(사)대한산란계협회		보 도 자 료		번창하는 산란산업 활기찬 농장 만족하는 소비자	
보도 시점 : 2024. 10. 22.(화) 08:00					
담당 부서	(사)대한산란계협회 사무국	책임자	회 장 안두영(010-3723-1332)		
		담당자	전 무 김경두(010-3722-2822)		

정부의 무리한 규제로 계란산업 위기에 직면
- 정부예산 66억원 절약하기 위해 국민 피해 3조 8천억원 유발 -
- 계란 생산농가들, 정부의 계란생산 제한기준 소급적용에 헌법소원 청구 -

물가안정·규제효과·민생경제 육성!, 과거에 묶인 킬러규제 팍팍 걷어내야!, 공직자들 마인드 확 바뀌어야!, 정부 소극적이면 안돼, 필요하면 규정도 바뀌어야! 등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수시로 강조하고 있는 말이다.

그러나, 이 공약과 지시와는 반대로 가는 분야가 있다.

농축산품목 중 돼지·쌀·소에 이어 4번째로 산업규모가 크면서, 국민 식생활과 서민 장바구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계란 얘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줄이겠다고 아예 계란을 생산하고 있는 산란계(産卵鷄)의 사육량을 감축하라고 하고 있다. 그것도 기준 개정 이전(2018.9.1.)에 합법적으로 설치한 시설마저 내년 9월부터는 마리당 사육면적을 0.05제곱미터에서 0.075제곱미터로 50% 넓혀서 기르라는 것이다. 구더기가 무서우니 장을 담그지 말라는 것이다.

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면, 1일 계란 공급량은 4,600만 개에서 3,400만 개 수준으로 급감하고, 해당 농가들의 매출액(계란 생산량)은 33.3% 감소, 생산비는 약 13%(EU와 일본의 증가율 평균) 증가하게 된다.

일본이나 미국, 캐나다, 중국, 멕시코 등 계란 생산과 소비가 많은 국가들은 사육면적에 관한 규제 자체가 없다. 규제는 생산비를 높여서 가격을 상승시키고 산업을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계란농가들로 구성된 (사)대한산란계협회는 기준 확대 사유인 조류인플

루엔자 발생과 사육면적과는 관계가 없고(관련성을 나타내는 국내외 연구나 근거 전무, 규제영향분석서에서는 근거제시 없이 “추정(가정)”이라고 명시), 기준 개정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감소하였다고 성공사례로 제시한 일본의 사례는 사육면적과 관계없는 엉뚱한 자료이며, 계란값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관련산업의 피해가 막심함에도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기준을 소급적용하면, ▲편익 대비 피해 과다[편익 66억원(출처 : 농식품부), 피해는 생산자와 산업 등에 연간 1조 5,799억원 ~ 3조 7,586억원 발생(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 가격 폭등으로 서민·취약계층 가계부담 증가, ▲ 중소규모 농가의 연간 수익률 마이너스로 전환(6.5% → 마이너스 1.3%), ▲ 일본·미국·중국 등 사육면적기준이 없는 국가와의 역차별, ▲ 소비자 86%가 선호하는 저렴한 계란 인위적 퇴출(소비자 선택권 박탈), ▲ 생산량 감소로 계란 자급률 100% 붕괴, ▲ 시설교체를 위한 농가의 추가적인 부담 발생(약 1조 3,600억원), ▲ 농가 부채상환 불가(부채 상환기간은 15년인데 시설 사용은 7년으로 제한), ▲ 환경오염 시설로 간주하는 축사부지 소요 50% 증가, ▲ 기준확대는 오히려 기준 개정목적에 역행(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의 핵심인 차단방역 면적 50% 증가)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간 대한산란계협회에서는 농식품부에 “기준확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법 개정 이전에 합법적으로 설치한 시설은 내용연수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소급적용 규정을 철회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농식품부는, 기준 시행은 예정대로 하되, 생산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물가를 고려하여 약 2년간 단속을 유예(과태료 면제)한다는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미봉책마저도 난각번호 표시 문제(유예시 4번 표시하면 법 위반, 3번 표시하면 허위표시), 식품표시법·표시광고법·소비자보호법 등 다른 법령과의 상충 문제(농식품부는 유예, 다른 법은 처벌), 행정규칙(공문 지시)으로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유예할 수 없음에 따른 특별법 등 제정 문제,

살처분 보상금 적용 문제(유예기간 중에는 기존 사육 마릿수 적용하여 보상하는지, 개정된 마릿 수로 보상하는지), 유예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 공표 문제(이익과 피해 비교) 등 많은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야 하나, 시행을 10개월 앞두고도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대한산란계협회 안두영 회장은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좁고 철새가 많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식품안전과 환경을 무엇보다도 중시하기 때문에 헛간이나 바닥에서 주로 사육하는 유럽식 동물복지형 사육보다는 일본이나 미국과 같이 위생적이고 인력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스마트팜식 집약사육이 더 적합하다" 고 하면서, 사육기준 면적이 넓으면 생산비가 많이 들고 축사 부지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계란가격이 크게 상승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철새가 도래하는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5개월간은 조류인플루엔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하여 밀폐형 사육과 외부 오염원의 농장내 차단방역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동물복지형인 유럽식 기준을 조류인플루엔자 방지 목적으로 도입한 것은 넌센스"라고 하면서,

"사육규모를 인위적으로 감축하는 문제는 사과·대과나 배추 가격 파동 등과 같은 자연환경적·한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제가 축적되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으로 살처분 수량이 예년(연 평균 300만 마리)에 비해 조금이라도 더 증가하게 될 경우 그 파동은 감당할 수 없이 커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2022년 미국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산란계를 약 10% 가량 살처분했을 때 계란 가격은 220%(출처 : 미국 노동통계국)까지 치솟은 바 있다.

아울러 안회장은, 기준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법 개정 이전에 합법적으로 시설을 설치한 농가에 대한 신뢰보호원칙 위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고, 생산자 등의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부득이 10월 21일(월) 대형 로펌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고 밝히면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현재도 일본, 중국, 동남아, 미국(40개주), 캐나다, 멕시코, 러시아 등 계란 생산량이 많은 대부분의 국가가 사육면적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과 달리 사육 면적을 규제(0.05m²/마리)하고 있고, PLS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시행으로 살충제와 항생제 사용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계란 등급제와 난각에 산란일자 표시제를 이행토록 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한 생산자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 붙임 1. 산란계 사육기준면적 소급적용의 문제점
2. 쟁점에 대한 농식품부와 협회의 주장 비교
 3. 축산법 시행령 개정 「규제영향분석서」(관련부분 발췌)
 4. 농촌경제연구원 연구결과보고서(관련부분 발췌)
 5. 최근 10년간 산란계 마리당 순수익률(통계청 발표)